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이전사업에서 관련 지자체장의 동의·협의를 근거 마련〉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8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지자체장 동의	3
2. 이전후보지 선정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동의 의견 등 사전 확인 절차 마련	8
3.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지자체장과 합의에 의한 이전부지 선정 ...	11
4.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합의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에 관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원에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전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 다수로 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 10여명이 추가될 수 있어(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우며, 선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므로(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사실상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중도 폐지 내지 이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매우 높음.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 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이 관계자 간 논의로만 그치는 것인지 의견일치를 본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하여 이전사업 추진 시 혼선이 발생되므로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상 협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안 제4조, 제11조),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까지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끔 이전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투명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헌법상 법치주의나 행정법상 비례원칙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으로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안 제8조) 종전부지·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평등한 지위보장과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에 입각한 사업진행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11조).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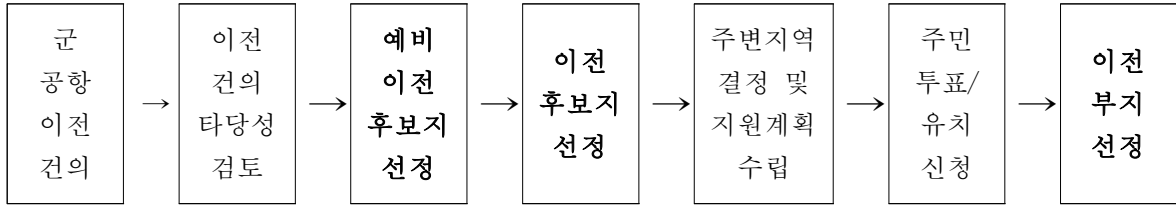
1.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지자체장 동의

-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현행법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 ②(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u>협의하고</u>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④(생략)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 ----- ----- <u>협의하되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u> ----- -----. ④(현행과 같음)

-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논의·숙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¹⁾.



□ 군 공항은 통상 소음발생 등으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기 전에 관계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절차(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정, 사업 시행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이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 내지 논의과정을 말하는 것²⁾으로, 동의 및 합의와 다르다는 점에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시 관계 지자체장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및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로 관철시킬 경우, 향후 관계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사업지연, 사업중단 또는 사업무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2) 네이버 지식백과

□ 따라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첫 단계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지자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지자체장과의 의사합치로 이후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국가사무³⁾)로, 현행법 제4조제2항⁴⁾에 따라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 국방의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나, 개정안과 같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관계 지자체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게 되면 국방의 목적보다 관계 지자체의 군 공항 유치 실익여부가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현재도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표명이 여러 차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군 공항 이전부지 예비후보지 선정시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지자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은 현행법 제5조⁵⁾ 및 제8조제3항⁶⁾에 따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3) 헌법재판소는 화성시와 국방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은 국방에 관한 사무이므로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고 판시(2017.12.28. 2017헌라2)

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동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예비이전후보지의 지자체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⁷⁾.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지자체장의 동의여부보다 군사작전 및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 지자체장의 동의 요구시 사업 개시부터 어려워질 우려, 군 공항 이전사업이 전적으로 지자체장의 의사에 달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및 현재의 협의절차에서도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음.

수원시는 이전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전 부정적 견해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반대할 경우 선정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6)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7)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광주시는 사업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선정위원회와 주민투표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충분)는 의견을 제시함.

전라남도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전동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화성시는 관계 지자체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 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둘러싼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이전후보지 선정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동의 의견 등 사전 확인 절차 마련

□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선정위원회가 이전후보지 선정을 심의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과의 협의결과 또는 지자체장의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생략) <u><신설></u>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이전후보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는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결과 또는 유치동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u>

□ 현행법 제6조⁸⁾에서는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정부부처(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중전부지 지자체장,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8)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중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중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 등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 동 심의위원회는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 기준 및 선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데, 현행법 제8조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된 이전부지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의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의 사전절차인 국방부장관과 관계 지자체 장관과의 협의결과 또는 지자체장의 유치동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관계 지자체장의 유치동의, 유치반대 또는 조건부 유치 등의 의견을 사전에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본 심의위원회 회의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들에게 회의안건 및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배포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부장관과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 차이 등의 사유로 인해 안건 배포 지연 및 일부 안건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협의결과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현행법 시행령 제6조제5항¹⁰⁾에 따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바,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되는 내용으로 안건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예: 예비이전후보지 협의결과 등)이 포함된다면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선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높지 않은 점과 사전확인 절차를 둔다고 해서 선정위원회 의결 방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달라지지 아니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의견이 보다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관계 지자체장과의 협의 및 선정결과 통보 절차가 이미 있고, 지자체는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이 필요하므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지위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의견(수원시, 광주시, 전라남도)과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음(화성시).

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 지자체장과 합의에 의한 이전부지 선정

□ 현재 군 공항 이전부지는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하여 종전부지 또는 이전후보지 지자체¹¹⁾와 협의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 ③ (생략)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 장관은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 ----- <u>하며, 종전부지 또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한다.</u>

□ 현행법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주민투표→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이전유치 신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이전부지 선정’의 진행과

11) 개정안은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전부지가 선정되기 전이므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정을 거치되, 현행법 제8조제4항¹²⁾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함.

□ 개정안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의 ‘공정’과 ‘투명’의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종전부지 또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과 협의 시 상호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시 양측 간에 수평한 관계 하에서 자유롭고 충분한 논의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후속절차인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투표 실시비용 만큼의 예산낭비 문제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부지 선정이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또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과 ‘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지자체장의 의사 및 영향력을 강화시켜 향후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12)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첫째, 종전부지 지자체장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군 공항 이전부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이전후보지·이전부지 선정절차·기준 심의에 참여하여 동등한 지위에서 의견 개진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상에도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필수조건인 바, 지자체 및 지자체장의 이전부지 유치의사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다수의 타 입법례에서도 ‘공정’, ‘투명’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특별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과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에 의한 주민투표 및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도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의 의사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그에 반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현재는 이전주변지역¹³⁾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 국방부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지원계획을 합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 ----- ----- ----- ----- ----- ----- ----- -----합 의-----.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14 –

- 군 공항 이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이 선정되면 국방부장관은 종전부지 지자체장과 소음발생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¹⁴⁾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과 사전에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함.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함.
- ‘협의’의 개념은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 내지 논의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의 및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회신 내용을 전부 수용할 의무는 없음.
- 개정안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국방부장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장 모두의 의견이 일치된 상태에서 확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 향후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1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②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에 연접한 시·군·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인 지역

□ 다만,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이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이전사업 자체가 관계 지자체의 지원계획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사업지연, 사업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현재의 이전부지 선정단계 상 지원계획이 수립된 후에 주민 투표 및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의 절차가 있어 사실상 관계 지자체가 수용하지 못하는 정도의 지원계획인 경우에는 이후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지원계획에 관한 기존의 타 입법례¹⁵⁾에서도 합의가 아닌 협의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수립된 지원계획을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는 경우 주민투표 및 지자체의 유치신청 단계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8

15)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